

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-71호

지형도면중정정

1.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-346호(2017.07.04.)로 기 지정한 마산시 진북면 일반국도79호선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형도면을 정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<http://liris.mlt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2018년 2월 9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지형도면 정정 사유

구분	시·군	지역·지구명	연장 (km)	지구지정일	지형도면 정정 사유
당초	창원시	진동-마산 국도건설공사	8.38	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-24호(2006.02.01)	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북면 정현리 207-3임, 226-5임, 227임, 208임 4필지 접도구역 수정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
변경	창원시	진동-마산 국도건설공사	8.38	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-24호(2006.02.01)	

지형도면(S=1:1,500) : 게재생략